|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1980년 9월 10일 제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통과. 1993년 10월 31일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의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1차 개정. 1999년 8월 30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의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2차 개정. 2005년 10월 27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의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3차 개정, 2007년 6월 29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의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4차 수정. 2007년 12월 29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의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5차 수정. 2011년 6월 30일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의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6차 수정. 2018년 8월 31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의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7차 수정)  **제1조**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 하나 1개 납세연도 내에 중국 경내에서 누적 만183일을 거주한 개인은 거주자 개인이다. 거주자 개인은 중국 경내 및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 하고 동시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 하고 1개 납세연도 내에 중국 경내에서의 거주기간이 만183일 미만인 개인은 비거주자 개인이다. 비거주자 개인은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납세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2조** 다음 각 호의 개인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 임금, 급여소득  (2) 노무보수 소득  (3) 원고료 소득  (4) 특허권사용료 소득  (5) 경영소득  (6) 이자, 주식배당금, 특별배당금 소득  (7) 재산임대소득  (8) 재산양도소득  (9) 우발소득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전항 제(1)~제(4)호의 소득(이하 “종합소득”)은 납세연도를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합병 계산한다. 비거주자 개인이 전항 제(1)~(4)호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매회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납세자가 취득한 전항 제(5)~(9)호의 소득은 본 법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3조** 개인소득세 세율  (1) 종합소득, 3%~45%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세율표 별첨)  (2) 경영소득, 5%~35%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세율표 별첨)  (3) 이자, 주식배당금, 특별배당금 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및 우발소득은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20%이다.  **제4조** 다음 각 호의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1) 성(省)급 인민정부, 국무원 부서 위원회 및 중국인민해방군의 군 이상 단위 및 외국조직, 국제조직이 수여하는 과학, 교육, 기술, 문화, 위생, 체육, 환경보호 등 분야의 상금  (2) 국채 및 국가가 발행한 금융채권 이자  (3) 국가의 통일 규정에 의거하여 발급한 보조금, 수당  (4) 복지비, 무휼금(撫恤金), 구제금  (5) 보험배상금  (6) 군인의 전업비, 제대비, 퇴역금  (7) 국가의 통일 규정에 의거하여 간부, 직원에게 발급된 정착비, 퇴직비, 기본양로금 또는 퇴직비, 이직비, 이직생활보조금  (8) 유관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면세해야 하는 각 국 주중대사관, 영사관의 외교대표, 영사관원 및 기타 인원의 소득  (9) 중국 정부가 참여하는 국제공약, 체결한 협정에서 면세를 규정한 소득  (10) 국무원이 정한 기타 면세소득  전항 제(10)호의 면세 규정은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한다.  **제5조** 다음 각 호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준과 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정하며,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1) 장애인, 무의탁노인 및 열사(烈士) 유족의 소득  (2) 자연재해로 인해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국무원이 기타 세금 감면의 상황을 정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제6조** 과세소득의 계산  (1) 거주자 개인의 종합소득은 매 1개 납세연도의 수입액에서 비용 6만 위안과 전항 공제, 전항 부가공제 및 법에 의거하여 확정된 기타 공제액을 감한 후의 잔액이 과세소득이다.  (2) 비거주자의 임금, 급여소득은 매월 수입액에서 비용 5천 위안을 감한 후의 잔액이 과세소득이다.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매 회 수입액이 과세소득이다.  (3) 경영소득은 매 1개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감한 후의 잔액이 과세소득이다.  (4) 재산임대소득은 매회 수입이 4천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용 8백위안을 감한다. 4천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20%의 비용을 감한 후의 잔액이 과세소득이다.  (5) 재산양도소득은 재산양도 수입액에서 재산원가 및 합리적인 비용을 감한 후의 잔액이 과세소득이다.  (6) 이자, 주식배당금, 특별배당금 소득과 우발소득은 매회 수입액이 과세소득이다.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수입액에서 20%의 비용을 감한 후의 잔액이 수입액이다. 원고료 소득의 수입액은 70% 기준으로 감액하여 계산한다.  개인이 소득을 교육, 빈곤지역 구제, 빈곤자 지원 등 공익자선사업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무원이 공익자선사업 기부금에 대해 전액 세전공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본 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전항 공제는 거주자 개인이 국가가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납부한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 등을 포함한다. 전항 부가공제는 자녀교육, 계속교육, 중병의료, 주택대출이자나 주택임대료, 노인부양 등 지출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범위, 기준 및 실시절차를 국무원에서 확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제7조** 거주자 개인이 중국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은, 해당 납부세액에서 경외에서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 세액을 공제한다. 단 공제액은 해당 납세자의 경외소득에 대하여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다음 각 호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납세조정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1) 개인과 그의 특수관계자 간의 비즈니스 거래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자의 납부세액이 감소하고, 동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2) 거주자 개인이 지배하거나 또는 거주자 개인과 거주자 기업이 공동으로 지배하여 실질 세부담이 명확하게 낮은 국가(지구)에 설립한 기업이고 합리적인 경영 수요가 없으며, 응당 거주자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이윤을 분배하지 않거나 분배를 감소시키는 경우  (3) 개인이 기타 합리적인 상업 목적을 갖추지 못한 안배를 통해 부당한 세수이익을 취득한 경우  세무기관이 전항 규정에 따라 납세조정을 하여 세금을 보충 징수해야 하는 경우, 세금을 보충 징수하고 동시에 법에 의거하여 이자를 추가 징수해야 한다.  **제9조** 개인소득세는 소득자가 납세자이고, 소득을 지불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이다. 납세자가 중국 국민 신분증 번호를 보유한 경우에는 중국 국민 신분증 번호가 납세자 식별번호이다. 납세자가 중국 국민 신분증 번호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기관에서 납세자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세자 식별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다음 각 호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는 법에 의거하여 납세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1) 종합소득을 취득하여 종합 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2) 과세소득을 취득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3) 과세소득을 취득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4) 경외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5) 해외이주로 인해 중국 호적을 말소하는 경우  (6) 비거주자 개인이 중국 경내의 2곳 이상에서 임금, 급여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7) 국무원이 정한 기타 상황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전체 인력과 전체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처리해야 하며, 또한 납세자에게 해당 개인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종합소득은 연간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또는 매회 기준으로 세금을 예비 공제하여 예납한다. 종합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득을 취득한 다음해 3월 1일에서 6월 30일 내에 종합 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예비 공제 및 예납 방법은 국무원 세무주관부문에서 제정한다.  거주자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항 부가공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세액 예납시 규정에 따라 공제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비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임금, 급여소득,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및 특허권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또는 매회 기준으로 세액을 대리공제 및 납부하며 종합 정산하지 않는다.  **제12조** 납세자가 취득한 경영소득은 연간 단위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납세자가 월간 또는 분기 종료 후 15일 내에 세무기관에 납세신고표를 발송하고 세액을 예납하며, 소득을 취득한 다음해 3월 31일 이전까지 종합 정산을 진행한다.  납세자가 취득하는 이자, 주식배당금, 특별배당금 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과 우발소득은 매월 또는 매회를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또는 매회 기준으로 세금을 원천징수 납부한다.  **제13조** 납세자가 취득한 과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소득을 취득한 익월 15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납세신고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납세자가 취득한 과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소득을 취득한 다음해 6월 30일 이전에 세금을 납부한다. 세무기관이 기한 내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 납세자는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 개인이 중국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은 소득을 취득한 다음해 3월 1일에서 6월 30일 이내에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 개인이 중국 경내의 2곳 이상에서 임금, 급여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을 취득한 익월 15일 내에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해외이주로 인해 중국 호적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중국 호적을 말소하기 전에 세금의 정산 납부를 처리해야 한다.  **제14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또는 매회 기준으로 예비 공제, 대리 공제하는 세금을 익월 15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하고,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공제 납부 신고표를 보고 발송해야 한다.  납세자가 종합 정산 및 퇴세수속을 처리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자를 위해 종합 정산 및 퇴세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세무기관이 심사한 후 국고 관리에 관한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퇴세수속을 처리한다.  **제15조** 공안, 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 등 유관 부문은 세무기관에 협조하여 납세자의 신분, 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 위생, 의료보장, 민정, 인력자원 사회보장, 주택 도시 및 농촌(城鄕) 건설, 공안, 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 등 유관 부문은 세무기관에 납세자 자녀교육, 계속교육, 중병의료, 주택대출 이자, 주택 임대료, 노인 부양 등 전항 부가공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부동산 등기 등 유관 정보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를 대조 검사한다. 등기기구는 이전등기를 처리할 때, 해당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개인소득세 완납증빙을 검사해야 한다. 개인의 지분권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를 처리할 때, 시장주체등기기관이 해당 지분권 거래와 관련된 개인소득세 완납증빙을 검사해야 한다.  유관 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납세자, 원천징수자가 본 법을 준수하는 상황을 신용정보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연합하여 격려하거나 징계한다.  **제16조** 각 항 소득의 계산은 인민폐로 한다. 소득이 인민폐 이외의 화폐인 경우, 인민폐 환율 중간값을 기준으로 인민폐로 환산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제17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의 2%를 수수료로 지불한다.  **제18조** 저축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개시, 징수 감면, 징수 중단 및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제19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세무기관과 해당 근무인력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과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20조**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는 본 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21조** 국무원은 본 법에 의거하여 실시조례를 제정한다.  **제22조** 본 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소득세 세율표 1**  **（종합소득에 적용）**   |  |  |  | | --- | --- | --- | | 등급 | 전체 연도의 과세소득 | 세율(％） | | 1 | 36,000위안 이하 | 3 | | 2 | 36,000위안 초과 ~ 144,000위안 | 10 | | 3 | 14,4000위안 초과 ~ 300,000위안 | 20 | | 4 | 300,000위안 초과 ~ 420,000위안 | 25 | | 5 | 420,000위안 ~ 660,000위안 | 30 | | 6 | 660,000위안 ~ 960,000위안 | 35 | | 7 | 960,000위안 초과액 | 45 |   (비고 1: 본 표에서 지칭하는 ‘전체 연도의 과세소득’은 본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종합소득으로 매 1개 납세연도의 수입액에서 비용 6만 위안과 전항 공제, 전항 부가공제 및 법에 의거하여 확정된 기타 공제액을 감한 후의 잔액을 의미한다.  비고2: 비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임금, 급여소득,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및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본 표를 월간 기준으로 환산한 후에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개인소득세 세율표 2**  **（경영소득에 적용）**   |  |  |  | | --- | --- | --- | | 등급 | 전체 연도의 과세소득 | 세율（％） | | 1 | 30,000위안 이하 | 5 | | 2 | 30,000위안 초과 ~ 90,000위안 | 10 | | 3 | 90,000위안 초과 ~ 300,000위안 | 20 | | 4 | 300,000위안 초과 ~ 500,000위안 | 30 | | 5 | 500,000위안 | 35 |   (비고: 본 표에서 지칭하는 ‘전체 연도의 과세소득’은 본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1개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감한 후의 잔액을 의미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1980年9月10日第五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三次会议通过　根据1993年10月31日第八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四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的决定》第一次修正　根据1999年8月30日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一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的决定》第二次修正　根据2005年10月27日第十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八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的决定》第三次修正　根据2007年6月29日第十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八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的决定》第四次修正　根据2007年12月29日第十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十一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的决定》第五次修正　根据2011年6月30日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一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的决定》第六次修正　根据2018年8月31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五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的决定》第七次修正）  　　第一条　在中国境内有住所，或者无住所而一个纳税年度内在中国境内居住累计满一百八十三天的个人，为居民个人。居民个人从中国境内和境外取得的所得，依照本法规定缴纳个人所得税。  在中国境内无住所又不居住，或者无住所而一个纳税年度内在中国境内居住累计不满一百八十三天的个人，为非居民个人。非居民个人从中国境内取得的所得，依照本法规定缴纳个人所得税。  纳税年度，自公历一月一日起至十二月三十一日止。  第二条　下列各项个人所得，应当缴纳个人所得税：  　　（一）工资、薪金所得；  　　（二）劳务报酬所得；  　　（三）稿酬所得；  　　（四）特许权使用费所得；  　　（五）经营所得；  　　（六）利息、股息、红利所得；  　　（七）财产租赁所得；  　　（八）财产转让所得；  （九）偶然所得。  居民个人取得前款第一项至第四项所得（以下称综合所得），按纳税年度合并计算个人所得税；非居民个人取得前款第一项至第四项所得，按月或者按次分项计算个人所得税。纳税人取得前款第五项至第九项所得，依照本法规定分别计算个人所得税。  第三条　个人所得税的税率：  　　（一）综合所得，适用百分之三至百分之四十五的超额累进税率（税率表附后）；  　　（二）经营所得，适用百分之五至百分之三十五的超额累进税率（税率表附后）；  （三）利息、股息、红利所得，财产租赁所得，财产转让所得和偶然所得，适用比例税率，税率为百分之二十。  第四条　下列各项个人所得，免征个人所得税：  　　（一）省级人民政府、国务院部委和中国人民解放军军以上单位，以及外国组织、国际组织颁发的科学、教育、技术、文化、卫生、体育、环境保护等方面的奖金；  　　（二）国债和国家发行的金融债券利息；  　　（三）按照国家统一规定发给的补贴、津贴；  　　（四）福利费、抚恤金、救济金；  　　（五）保险赔款；  　　（六）军人的转业费、复员费、退役金；  　　（七）按照国家统一规定发给干部、职工的安家费、退职费、基本养老金或者退休费、离休费、离休生活补助费；  　　（八）依照有关法律规定应予免税的各国驻华使馆、领事馆的外交代表、领事官员和其他人员的所得；  　　（九）中国政府参加的国际公约、签订的协议中规定免税的所得；  　　（十）国务院规定的其他免税所得。  前款第十项免税规定，由国务院报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备案。  第五条　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减征个人所得税，具体幅度和期限，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并报同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备案：  　　（一）残疾、孤老人员和烈属的所得；  　　（二）因自然灾害遭受重大损失的。  国务院可以规定其他减税情形，报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备案。  第六条　应纳税所得额的计算：  　　（一）居民个人的综合所得，以每一纳税年度的收入额减除费用六万元以及专项扣除、专项附加扣除和依法确定的其他扣除后的余额，为应纳税所得额。  　　（二）非居民个人的工资、薪金所得，以每月收入额减除费用五千元后的余额为应纳税所得额；劳务报酬所得、稿酬所得、特许权使用费所得，以每次收入额为应纳税所得额。  　　（三）经营所得，以每一纳税年度的收入总额减除成本、费用以及损失后的余额，为应纳税所得额。  　　（四）财产租赁所得，每次收入不超过四千元的，减除费用八百元；四千元以上的，减除百分之二十的费用，其余额为应纳税所得额。  　　（五）财产转让所得，以转让财产的收入额减除财产原值和合理费用后的余额，为应纳税所得额。  （六）利息、股息、红利所得和偶然所得，以每次收入额为应纳税所得额。  劳务报酬所得、稿酬所得、特许权使用费所得以收入减除百分之二十的费用后的余额为收入额。稿酬所得的收入额减按百分之七十计算。  个人将其所得对教育、扶贫、济困等公益慈善事业进行捐赠，捐赠额未超过纳税人申报的应纳税所得额百分之三十的部分，可以从其应纳税所得额中扣除；国务院规定对公益慈善事业捐赠实行全额税前扣除的，从其规定。  本条第一款第一项规定的专项扣除，包括居民个人按照国家规定的范围和标准缴纳的基本养老保险、基本医疗保险、失业保险等社会保险费和住房公积金等；专项附加扣除，包括子女教育、继续教育、大病医疗、住房贷款利息或者住房租金、赡养老人等支出，具体范围、标准和实施步骤由国务院确定，并报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备案。  第七条　居民个人从中国境外取得的所得，可以从其应纳税额中抵免已在境外缴纳的个人所得税税额，但抵免额不得超过该纳税人境外所得依照本法规定计算的应纳税额。  第八条　有下列情形之一的，税务机关有权按照合理方法进行纳税调整：  　　（一）个人与其关联方之间的业务往来不符合独立交易原则而减少本人或者其关联方应纳税额，且无正当理由；  　　（二）居民个人控制的，或者居民个人和居民企业共同控制的设立在实际税负明显偏低的国家（地区）的企业，无合理经营需要，对应当归属于居民个人的利润不作分配或者减少分配；  　　（三）个人实施其他不具有合理商业目的的安排而获取不当税收利益。  税务机关依照前款规定作出纳税调整，需要补征税款的，应当补征税款，并依法加收利息。  第九条　个人所得税以所得人为纳税人，以支付所得的单位或者个人为扣缴义务人。  纳税人有中国公民身份号码的，以中国公民身份号码为纳税人识别号；纳税人没有中国公民身份号码的，由税务机关赋予其纳税人识别号。扣缴义务人扣缴税款时，纳税人应当向扣缴义务人提供纳税人识别号。  第十条　有下列情形之一的，纳税人应当依法办理纳税申报：  　　（一）取得综合所得需要办理汇算清缴；  　　（二）取得应税所得没有扣缴义务人；  　　（三）取得应税所得，扣缴义务人未扣缴税款；  　　（四）取得境外所得；  　　（五）因移居境外注销中国户籍；  　　（六）非居民个人在中国境内从两处以上取得工资、薪金所得；  　　（七）国务院规定的其他情形。  扣缴义务人应当按照国家规定办理全员全额扣缴申报，并向纳税人提供其个人所得和已扣缴税款等信息。  第十一条　居民个人取得综合所得，按年计算个人所得税；有扣缴义务人的，由扣缴义务人按月或者按次预扣预缴税款；需要办理汇算清缴的，应当在取得所得的次年三月一日至六月三十日内办理汇算清缴。预扣预缴办法由国务院税务主管部门制定。  居民个人向扣缴义务人提供专项附加扣除信息的，扣缴义务人按月预扣预缴税款时应当按照规定予以扣除，不得拒绝。  非居民个人取得工资、薪金所得，劳务报酬所得，稿酬所得和特许权使用费所得，有扣缴义务人的，由扣缴义务人按月或者按次代扣代缴税款，不办理汇算清缴。  第十二条　纳税人取得经营所得，按年计算个人所得税，由纳税人在月度或者季度终了后十五日内向税务机关报送纳税申报表，并预缴税款；在取得所得的次年三月三十一日前办理汇算清缴。  纳税人取得利息、股息、红利所得，财产租赁所得，财产转让所得和偶然所得，按月或者按次计算个人所得税，有扣缴义务人的，由扣缴义务人按月或者按次代扣代缴税款。  第十三条　纳税人取得应税所得没有扣缴义务人的，应当在取得所得的次月十五日内向税务机关报送纳税申报表，并缴纳税款。  纳税人取得应税所得，扣缴义务人未扣缴税款的，纳税人应当在取得所得的次年六月三十日前，缴纳税款；税务机关通知限期缴纳的，纳税人应当按照期限缴纳税款。  居民个人从中国境外取得所得的，应当在取得所得的次年三月一日至六月三十日内申报纳税。  非居民个人在中国境内从两处以上取得工资、薪金所得的，应当在取得所得的次月十五日内申报纳税。  纳税人因移居境外注销中国户籍的，应当在注销中国户籍前办理税款清算。  第十四条　扣缴义务人每月或者每次预扣、代扣的税款，应当在次月十五日内缴入国库，并向税务机关报送扣缴个人所得税申报表。  纳税人办理汇算清缴退税或者扣缴义务人为纳税人办理汇算清缴退税的，税务机关审核后，按照国库管理的有关规定办理退税。  第十五条　公安、人民银行、金融监督管理等相关部门应当协助税务机关确认纳税人的身份、金融账户信息。教育、卫生、医疗保障、民政、人力资源社会保障、住房城乡建设、公安、人民银行、金融监督管理等相关部门应当向税务机关提供纳税人子女教育、继续教育、大病医疗、住房贷款利息、住房租金、赡养老人等专项附加扣除信息。  个人转让不动产的，税务机关应当根据不动产登记等相关信息核验应缴的个人所得税，登记机构办理转移登记时，应当查验与该不动产转让相关的个人所得税的完税凭证。个人转让股权办理变更登记的，市场主体登记机关应当查验与该股权交易相关的个人所得税的完税凭证。  有关部门依法将纳税人、扣缴义务人遵守本法的情况纳入信用信息系统，并实施联合激励或者惩戒。  第十六条　各项所得的计算，以人民币为单位。所得为人民币以外的货币的，按照人民币汇率中间价折合成人民币缴纳税款。  第十七条　对扣缴义务人按照所扣缴的税款，付给百分之二的手续费。  第十八条　对储蓄存款利息所得开征、减征、停征个人所得税及其具体办法，由国务院规定，并报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备案。  第十九条　纳税人、扣缴义务人和税务机关及其工作人员违反本法规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和有关法律法规的规定追究法律责任。  第二十条　个人所得税的征收管理，依照本法和《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的规定执行。  第二十一条　国务院根据本法制定实施条例。  第二十二条　本法自公布之日起施行。  个人所得税税率表一  （综合所得适用）   |  |  |  | | --- | --- | --- | | 级数 | 全年应纳税所得额 | 税率（％） | | 1 | 不超过36000元的 | 3 | | 2 | 超过36000元至144000元的部分 | 10 | | 3 | 超过144000元至300000元的部分 | 20 | | 4 | 超过300000元至420000元的部分 | 25 | | 5 | 超过420000元至660000元的部分 | 30 | | 6 | 超过660000元至960000元的部分 | 35 | | 7 | 超过960000元的部分 | 45 |   （注1：本表所称全年应纳税所得额是指依照本法第六条的规定，居民个人取得综合所得以每一纳税年度收入额减除费用六万元以及专项扣除、专项附加扣除和依法确定的其他扣除后的余额。  　　 注2：非居民个人取得工资、薪金所得，劳务报酬所得，稿酬所得和特许权使用费所得，依照本表按月换算后计算应纳税额。）  个人所得税税率表二  （经营所得适用）   |  |  |  | | --- | --- | --- | | 级数 | 全年应纳税所得额 | 税率（％） | | 1 | 不超过30000元的 | 5 | | 2 | 超过30000元至90000元的部分 | 10 | | 3 | 超过90000元至300000元的部分 | 20 | | 4 | 超过300000元至500000元的部分 | 30 | | 5 | 超过500000元的部分 | 35 |   （注:本表所称全年应纳税所得额是指依照本法第六条的规定，以每一纳税年度的收入总额减除成本、费用以及损失后的余额。） |